

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14
----------	------

발의연월일 : 2025. 5. 2.

발의자 : 안영호, 강혜순, 이명녀
김태욱, 문희성, 김도운
정재환, 문기호, 홍영진
박경흠

1. 제정이유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인력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산불대응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4조)
-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사업추진(안 제7조)
- 산불방지 활동(안 제8조)
- 산불진화(안 제9조)
-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안 제10조)
- 포상(안 제11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규: 「산림보호법」 제29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9조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5. 4. 21. ~ 4. 28.(7일간)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국민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구민, 기업, 단체 및 관계 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구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9조(산불진화)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드론 등의 진화 장비와 임도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내 국가유산 등 주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하여야 한다.

③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민간 진화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현장투입

6 (제273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시 방화복 등 진화장비를 제공하여 현장투입 인력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산림보호법」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과 지역산불방지연도별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지역산불방지 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 까지 수립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불방지연도 별대책을 해당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 추진 실적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 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소 속: 중구 공원녹지과
- 직 급: 지방녹지주사보
- 이 름: 김지은
- 연락처: 052-290-4413